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사 건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박헌수 / 전 육군 소장
당 시 보 직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탄 원 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피고인과 관계	_____
탄원인 주소	_____
연 락 처	_____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법 원 주 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박헌수에 대하여 1심이 선고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검사의 항소로 다툼이 이어지는 만큼, 피고인이 실제로 전달받은 지시와 당시 인식한 임무의 내용,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유죄 판단에 이르신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계획한 행위인지,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응한 행위인지, 실제로 통제한 인원이 어느 범위인지 등 개인별 책임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비적으로 청합니다.

2. 탄원의 이유

2-1. 1심 무죄 판단의 의미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국군방첩사령부 측 수사관 지원 요청에 응하여 인력을 편성하고 그중 일부를 국회로 출동시킨 사정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국회에서의 위법한 체포 계획이나 내란 목적을 인식하고 중요임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된 1심 판단에는 실제 국회 출동을 요구받은 인원이 약 10명이었다는 점, 요청 당시 통화와 설명의 내용, 합동수사 관련 인력 지원으로 이해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휘관의 직위보다 피고인이 직접 알게 된 사실을 중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 고의와 가담 범위의 개별적 검토

피고인이 수사관을 편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정치인에 대한 위법한 신병 확보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지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의 표현, 피고인이 보고받은 목적, 국회 출동 인원에 전달된 임무, 출동 후 실제 지휘 주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른 지휘관이 알고 있던 전체 계획을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적과 고의에 관한 증명은 피고인 본인의 인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1심의 합리적 의문을 해소했는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력 편성이나 파견이라는 행정적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했고, 누구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를 특정한 증거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파견된 수사관의 실제 업무내용, 출동 시점의 보고체계,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명령권의 한계, 사후 보고와 사전 지시의 구별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타인의 행동 결과를 피고인의 의사로 곧바로 귀속하지 않는 신중한 심리를 부탁드립니다.

2-4. 판단이 달라질 경우의 예비적 선처

만일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는지, 합동수사 지원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목적을 인식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휘관의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는 지휘한 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시를 처음 기획한 사람, 파견을 요청한 사람, 일부 지원 인력을 편성한 사람의 역할을 구별하고,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해 책임을 정해 주십시오. 제출되는 복무·생활 관련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사실로 확인된 범위에서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1심이 주목한 통화의 길이와 인력 요청 내용, 실제 출동한 10여명의 보고 경로를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위법한 정치인 체포를 기획한 사람의 인식과 군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사람의 인식은 동일한 증거 없이 하나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출동 전 어떤 업무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피고인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계엄사령부 및 방첩사의 명령체계와 조사본부의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가 1심의 합리적 의문을 실제로 해소하는지 살펴주십시오.

3. 결어

1심이 내란 목적과 고의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합리적 이유가 항소심에서 다시 존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의혹의 크기나 직책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구체적 행동과 입증된 인식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적으로 박헌수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유지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경우에도 참여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를 헤아려 선처하여 주십시오. 재판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